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정책적 함의

노 대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 팀장

I. 들어가며

최근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영역의 세계화와 인구 사회학적 구조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변화가 복지국 가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복지축소 (Welfare Retrenchment)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복지확장 (Welfare Expans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 한다. 물론 사회지출 측면에서 복지축소나 확장이라는 수렴현상을 발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복지확장보다는 복지축소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축소의 경향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연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복지수요를 통제하려는 접근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공공부문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민간부문에게 위탁하던 서비스를 영리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두 정책은 근로연계 복지(Workfare) 정책 및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육성정책을 통해 조우하게 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이후 유럽 각국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자활지원기업(Work Integration Enterprise) 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하여 왔다. 사회적 기업 모델은 유럽대륙 국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1990년 복지개혁 이후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 모델을 접맥시킨 사회적 기업 모델을 모색하여 왔으며, 영국 또한 2005년 공동체기업 (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¹⁾과 홍콩²⁾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이미 정책적 실험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그 접근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부문의 수익모델'과 '전통적 사회적 경제부문의 협동조합 모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는 개별 국가의 제3섹터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섹터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부문이 강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에 기반한 공급전략을 구상 할 수 있을 것이고, 비영리민간부문이 강력하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급조직, 즉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급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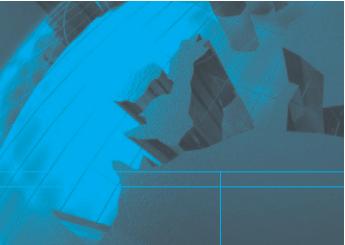
최근까지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관한 한,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모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

다. 이는 사회적 기업 개념의 주창세력이었던 사회적 경제부문의 이론과 사업모델이 다른 국가의 사회적 기업 제도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며, 각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리는 2005년 '사회적 기업(Impresa Sociale)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동반하며 새로운 사회적 기업 모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률은 2005년 제정된 영국의 '공동체기업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태리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갖는 함의와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은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약 8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즉, 자활공동체 등)을 포함하면 약 1천 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홍콩 사회서비스청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정보센터>(Social Enterprise Resource Centre)에 따르면, 2006년 중반 시점에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187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10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I. 이론적 검토

21세기 서구 복지국가는 공공서비스의 고비용과 낮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장부문과 제3섹터 중 어느 부문을 주요한 공급자로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제3섹터의 규모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은 제3섹터가 비영리민간부문과 사회적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내부적으로는 영리활동에 개입하는 기업부문과 비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일반조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바로 제3섹터의 경제조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3섹터의 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조직 – 예를 들면, 협동조합 – 이 중심을 이루어 왔지만, 점차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기업화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제3섹터 개념은 이들을 포괄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이 개념은 이질성을 포괄하는 실용적 범주에 불과하나, 향후 하나의 특성을 가진 부문(Sector)으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 제3섹터(Third Sector) 개념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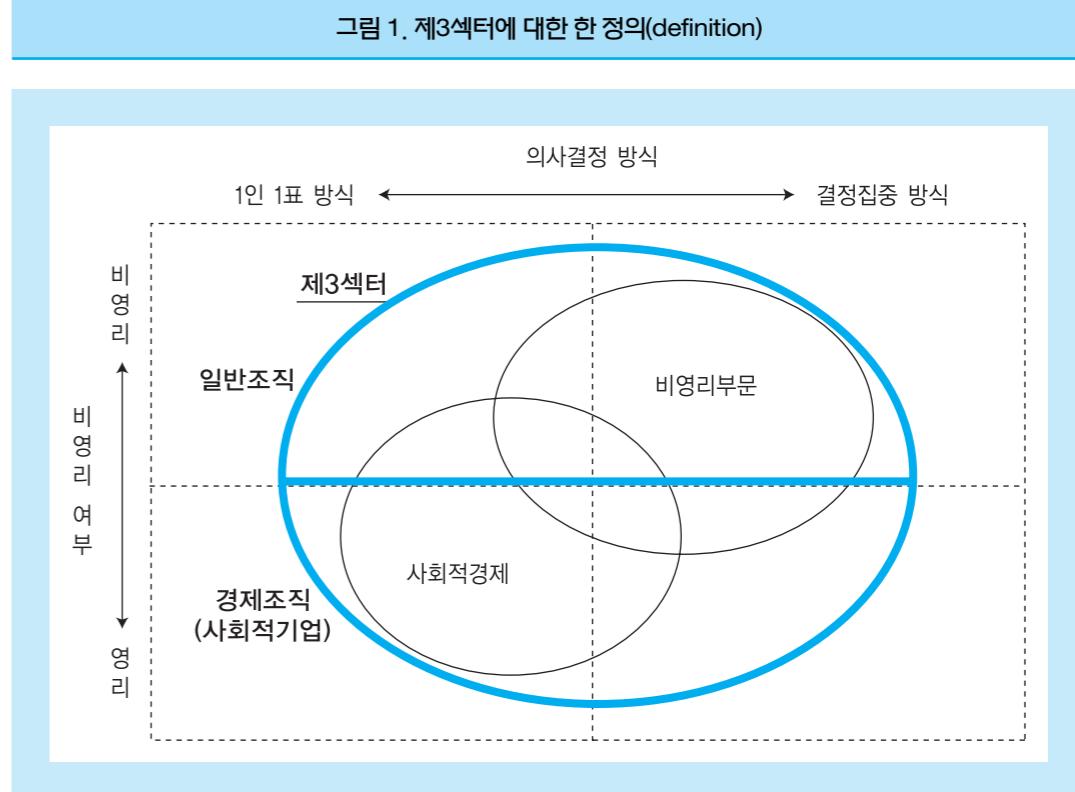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개념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영리민간부문(Non-Profit Sector),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그리고 제3섹터(Third Sector) 개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각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화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방식은 제3섹터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실용적인 접근 중 하나이다.

제3섹터는 제3섹터가 비영리민간부문과 사회적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내부적으로는 영리활동에 개입하는 기업부문과 비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일반조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바로 제3섹터의 경제조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3섹터의 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조직 – 예를 들면, 협동조합 – 이 중심을 이루어 왔지만, 점차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기업화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제3섹터 개념은 이들을 포괄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이 개념은 이질성을 포괄하는 실용적 범주에 불과하나, 향후 하나의 특성을 가진 부문(Sector)으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영리민간부문과 사회적경제부문은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과 목표 그리고 운영방식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부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

그림 1. 제3섹터에 대한 한 정의(definition)



단체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된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반드시 1인 1표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부문은 수익창출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조직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며, 주로 협동조합이나 공동조합 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된다. 특히 많은 조직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어 제3섹터는 매우 실용적 목적에 따라 탄

생된 개념으로 비영리민간부문과 사회적경제부문을 합친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비영리민간부문과 유럽 대륙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경제 부문을 ‘시민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 결과, 제3섹터의 주요한 행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어느 한 조직형태에 근거할 수 없었다. 제3섹터 개념은 조직형태에 있어 중립성과 다원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제3섹터 개념이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

는 새로운 범주(Category)로 변모하는 것이 불가 피하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정의: 수 렴을 향해

최근까지도 사회적 기업은 합의된 정의를 찾기 힘들고 여전히 협의과정에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형성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각 연구자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든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국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OECD 차원에서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개념정의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개념정의는 사회적 기업을 “자발성과 사회연대의 정신에 기초하고,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경제적·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며, 참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경영방식을 취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이를 요약 하면, “① 사업목적에 있어 사회적 유용성, ②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③ 수익배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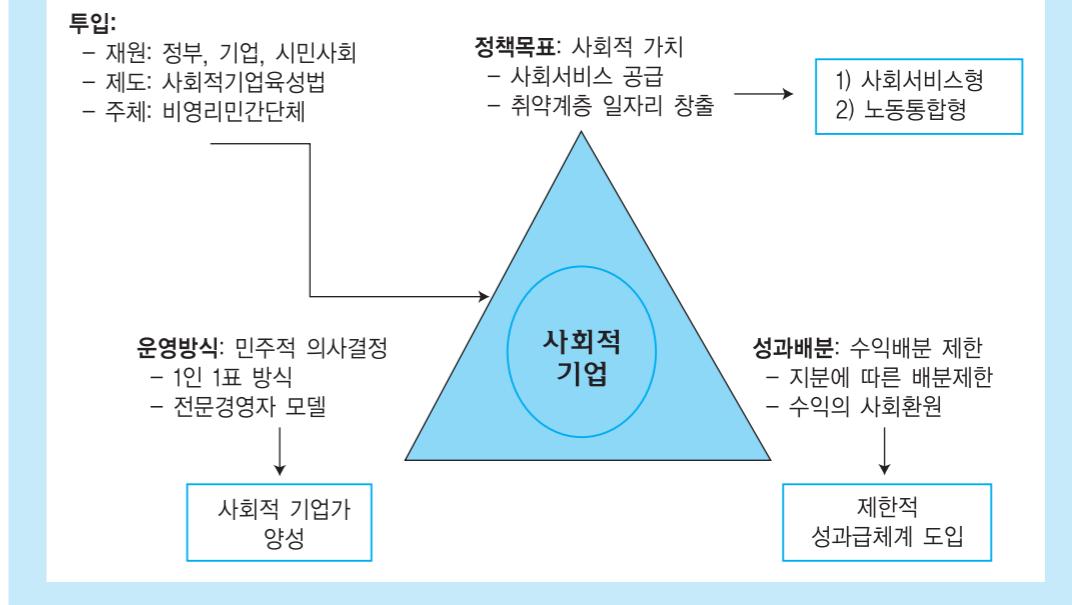
식에 대한 제한”이 근간을 이루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사회적 기업 개념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적 이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2]는 기존의 사회적 개념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요건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조직만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초기발전 과정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상이한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도록 유인하는 전략과 합치되지 않는다. 각국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포괄하는 개념화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유럽 국가에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토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발전시킬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모델에 기초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향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3) 드푸르니는 사회적 기업을 “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지속성, ② 높은 수준의 자율성, ③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④ 일정 수의 유급노동, ⑤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명확한 목적, ⑥ 시민들에 의한 주도, ⑦ 자본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 권한, ⑧ 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하는 참여적 성격, ⑨ 수익배분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efourny, 2001)

그림 2. 사회적 기업의 세 가지 구성요건



활동을 하는 영리기업(corporate philanthropies)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해 상업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자는 그 자체가 기업이며 사업 자체는 사회적 유용성과 관계가 적고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는 그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이나 사업은 순수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처럼 그 자체가 목적사업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Kerline, 2005). 이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

법 제정은 기존 사회적 기업 개념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상대화시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이 왜 중요한가

제3섹터를 구성하는 대표적 조직들이 어떠한 성격과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많은 유럽 복지국가는 상당수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경제의 조직을 주요한 공급자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쇠퇴일로에 있던 사회적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기업 개념에는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수익배분의 제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취약하여,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한 국가이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들이 복지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할 개연성이 적은 것이다. 이는 다양한 비영리민간 단체가 영리기업과 함께 서비스 공급경쟁에 뛰어들며, 영리기업의 수익모델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또한 제3섹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취약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법은 기존의 개념정의와 달리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즉 협동조합의 전통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는 1인 1표 방식을 포기하였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시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이 아닌 조직들을 포괄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외연을 확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제3섹터에서 사회적경제의 전통이 강력했던 이태리가 새로운 사회적 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에 힘을 보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개념은 점차 제3섹터와 연동된 개념이자 사회적 협동조합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Borzaga, 2007).

더욱이 이태리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사회적 기업법의 제정은 이러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유럽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 문제를 정리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멀게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법은 특히 한국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구 각국의 모델의 다양한 강점을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유럽 대륙국가들로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원칙을 수용하였으며, 영국으

로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확대 개방하는 조치를 수용하였다. 미국으로부터는 수익모델과의 접맥 가능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수용하였다(노대명, 2007).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사회적경제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구축하는데 많은 고민이 뒤따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영리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제정배경

이태리는 2005년 6월 13일 사회적 기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이를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중심의 법제를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던, 이태리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Fici는 이태리가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협동조합 부문 중심의 사회적 기업 발전전략에서 제3섹터 중심의 사회적 기업 발전전략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ici, 2006).

그렇다면 왜 이태리는 기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는가.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빠른 성장과 그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와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의 변화를 보면, 이들 조직이 최근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그 일자리 수가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아래 [그림 3] 참조).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개혁시도에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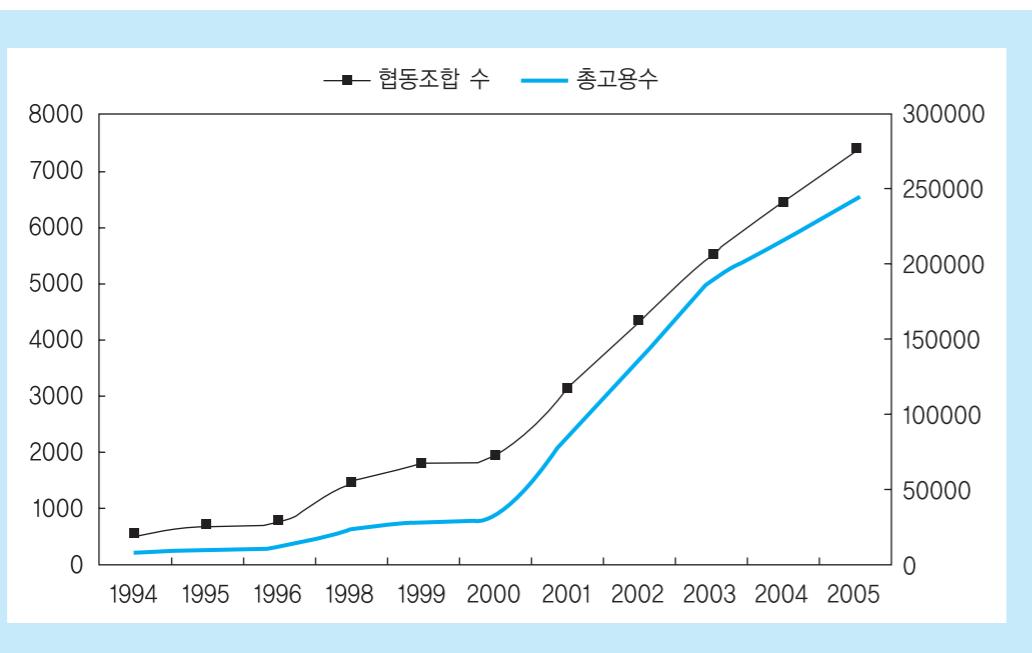
III.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특징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은 향후 복지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3섹터에 대한 포괄적 이해 및 그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압박의 수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서비스 민간위탁의 연성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서 영리부문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부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탄생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하고 조직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일정부분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조직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과 품질의 혁신을 이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은 관한 법⁴⁾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일반법('법률적 형태의 중립성 원칙') (Neutrality of the Legal Forms)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형태도 새로운 조직형태도 아니며, 각 조직의 내적 구조와 무관하게 모든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범주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회적 기업이란 협동조합과 같은 특수한 조직구조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든, 영리기업이든 전통적 비영리단체이든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법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⁴⁾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일반법 (General Law)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3.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관 및 고용추이(1994~2005)



주: 2001~2002년, 2004년은 추정치임.

자료: 위의 그림에 Borzaga(2007)의 수치를 결합시킨 그림임.

이처럼 조직구조를 사회적 기업의 요건에서 배제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라는 특수한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가격과 품질혁신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한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은 특수한 조직구조를 전제 할 뿐 아니라, 고유한 역사와 이례을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합법적인 브랜드처럼 활용하는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정부지원을 대가로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들로 하여금 등록 후에 자유롭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브랜드인 셈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인증하는 방식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법(AC) 또한 내용적으로 이태리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태리나 영국 등이 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양국의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급격한 규모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국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입을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의 전통 또는 협의구조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민법 제5권에 규정된 모든 민간단체 중 공익을 위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된 활동을 하며, 본 법 제2~제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적 조직(Private Organisations)을 지칭한다".⁵⁾

이 법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태리는 공익적 성격의 서

4) 프랑스의 공익형 협동조합(SCIC: Common Interest Co-operatives)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

5) 법 조문의 영어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All private organisations, also including those of the Fifth Book of the Civil Code, which carry out a stable and main economic and organised activity with the aim of production or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of social utility for the common interest, and which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2, 3 and 4, can be considered as social enterprises

비스로 규정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사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적(Private)이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며, 각 참여자가 사적으로 – 또는 비강제적으로 – 자유롭게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드시 영리조직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태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법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적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은 다음 네 가지이다: ① 시민단체(Associations), ② 재단(Foundations), ③ 협동조합(Cooperatives), ④ 영리기업(Societies)⁶⁾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네 번째로 일반영리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5권은 협동조합 외에도 영리기업(Societa)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를 협동조

합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외에도 영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태리 법제에서 각 법인격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민법 제5권 2511조는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권 2247조는 투자자 소유 기업(Societa)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Associations)나 재단 등 비영리단체들은 민법 제1권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비영리단체들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은 별도의 법 n° 381(199년 11월 8일 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는 법 n° 266(1991년 8월 11일 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사회기여형 시민단체’(Social Promotion Associations)는 법 n° 383(2000년 12월 7일 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법은 그 동안 협동조합의 특징이자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구성요건의 하나로 간주되어 오던 민주적 관리규정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1인 1표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별 영리기업에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적 기업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a new governance)를 전제하

고 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핵심 구성요인인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조치 중 전자만이 포기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 이상으로 후자의 문제 또한 영리기업의 사회적 기업화를 유인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왜 전자를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의사결정의 분산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후자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본질적 차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회적 기업법의 일반적 규정

사회적 기업법은 그 밖에도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법이나 다른 국가의 사회적 기업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다. 실제로 이태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단체가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유용성(Social

Utility)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사회, 의료, 교육, 훈련, 환경보호, 사회적 관광, 문화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하거나, ② 취업에로계층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A형과 B형의 유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법이 갖는 특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참고로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국의 사회적 기업 유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의 A형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을 지칭하며, B형은 취업에로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는 최근 사회적 기업 유형화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기업(Social Service Enterprise)과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해 성장하게 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으로의 분류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것이 조직형태에서 협동조합에 국한된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Not-for-Profit)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제하는 규정이 바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규정은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 또

6) 이태리에서 Enterprise는 1인 기업을 의미하며, 2인 이상의 기업은 Societa이다.

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법은 수익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배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법은 이사회나 조합원 또는 협력자에게 우호적인 수익배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처리만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 또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수용해 온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요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조직형태를 권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협치(Governance)의 문제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 기업형태를 갖는 모든 조직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비영리적 성격을 취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업구조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Multi-Stakeholders)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②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에 의한 사회적 기업 통제 및 이사회 지배 금지가 그것이다. 간단한 예로, 정부나 투자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임원진 또는 이사를 임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

민단체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리의 정치적·사회적 특성상 교회조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접적 지배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법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인원은 2인이다. 이는 이태리에서 사회적 기업은 1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그리고 최소자본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경영과 회계 등에 있어 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사회관련회계(Social Balance Sheet)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만일 사회적 기업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자산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미완의 과제: 수익모델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 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조직의 비영리적 성격과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호소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업을 지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비용(Ownership Costs)이 크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협동조합의 전통적 의사결정방식인 1인 1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영리기업과 달리 신뢰와 포용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잉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취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교환방식에 따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합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이 불가능한 것인 아니다. 만일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갖추어 진

다면,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취약계층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전통적 공급자에 비해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가격보다 비용이 큰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비용과 품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기업이 그러한 이익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르자가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유비용의 실질적인 절감을 이루고, 추가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생산조직 및 기술혁신을 통해 우월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Borzaga, 2007).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비영리적 성격이 사적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고용주나 투자자가 가져갈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7) 이태리어에서 기업(Enterprise)은 1인 회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직(Organisati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적 조직(Private Organisations)만이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을 배제하는 셈이다.

의 자원과 기부금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조직의 효율화와 기술혁신의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과 통제에 기반한 생산효율화와 기술혁신이 사회적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영리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보완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등의 문제는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몇몇 성공사례를 토대로 전국적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IV. 정책적 시사점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법 제정이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합의는 무엇인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대륙 모델과 영미 모델을 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제정된『사회적기업육성법』은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각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로부터 기본원칙과 세부항목을 차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이태

리,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이 노동통합기업(자활 지원기업 또는 자활공동체)과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인증방식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사회적기업법(Community interest Company Act)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노대명, 2007).

이를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 모델은 사회적경제의 전통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태리와 영국이 2005년 제정한 사회적 기업법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의 전통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지만, 운영모델과 관련해서는 매우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누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용주의적 고민에 따라, 협동조합의 전통이 취약한 상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대안적 경제조직에 대한 고민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지배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2007년 말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특성을 볼 때, 분명해진다. 전체 참여단체의 65%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34%가 복지단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방식에 있어 연대경제의 모델보다 영리기업의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과 맞물려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법 제정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초기 육성단계에 있는 우리사회와 정책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는 하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성격보다 기업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 모델은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의 목표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의 모델과 영리기업의 모델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현 정책에 의견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대안적 성격과 사회경제적 전통을 중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보완적 성격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태리의 사회적 기업법 제정은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체제 전반과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과 영역별 사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신양 편역(2005),『다른 경제』, 실업극복국민재단
- 노대명(2007), “한국 사회적기업의 환경과 발전 전망”,『드푸르니 초청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발표논문, 2007년 3월
- 장원봉(2006),『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나눔의 집
- 한상진(2005),『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울산대학교 출판부.
- Austrian Institute for SME Research(2007),『Country Fiche: Italy』, S.셔요 on practices and policies i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in Europe, Vienna 2007
- Guy Aznar et. al.,(1997),『Vers une economie

- plurielle: Un travail, une activite, un revenu pour tous』, Syros.
- Carlo Borzaga & Ermanno Tortia(2007), "Social Enterprises and Welfare Systems", unpublished paper.
- Mike Campbell(1999),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3 vols., EU Commision
- Gilbert Cette et al.(1998), 『Emplois de Proximite』, La Documentation Francaise
- Jacques Defourny et. al.(2000),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Centre d' Economie Sociale
- Jacques Defourny(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a European Perspec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Trento, december 12~14 2001
- Antonio Fici(2006), "The New Italian Law on Social Enterprise",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rganised by the OECD LEED Trento Centre, ISSN, and USAID, at Zagreb(Croatia), 28~29 september 2006
- B. Gilain & M. Nyssens(2000), 『Economie Sociale, Enjeux Conceptuels, Insertion par le Travail et Services de Proximite』, De Boeck
- Thierry Jeantet(2006), 『Economie sociale: la Solidarite au defi de l'efficacite』, La Documentation francaise
- Thierry Jeantet & Jean-Philippe Poulnot ed.(2007), 『L'Economie sociale, une
- alternative planetaire』, Editions Charles Leopold Mayer
- Janelle Kerline(2005),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our Differences", 『The Urban Institute』
- Jean-Louis Laville (sous la direction de) (1998), 『L' Insertion et Nouvelle Economie Sociale』, Desclée de Brouwer
- Jean-Louis Laville (1994), 『l' Economie solidaire』, Desclée de Brouwer
- Simon Li & Thomas Wong(2007), "Social enterprise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Spain and Hong Kong", Research and Library Services Division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5 December 2007
- Alain Lipietz(2001), 『Pour le Tiers Secteur: L'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La Decouverte.
- Patrick Loquet(2000), "Economie Sociale: De l' Insertion a la Solidarite", 『Espace social europeen』, n.516 - 23 au 29 juin 2000
- Lester M. Salamon & Wojciech Sokolowski (2001), 『Volunteering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Evidence From 24 Countries』, Johns Hopkins University.
- Lester M. Salamon ed.(2002),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SST